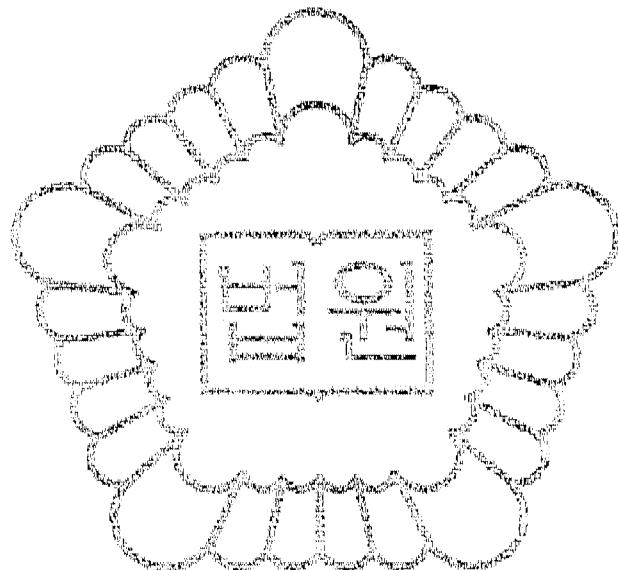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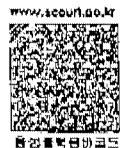


2010구합28007

판 결 서



서울행정법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0구합280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여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3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박성룡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영哲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만

소송수행자 임윤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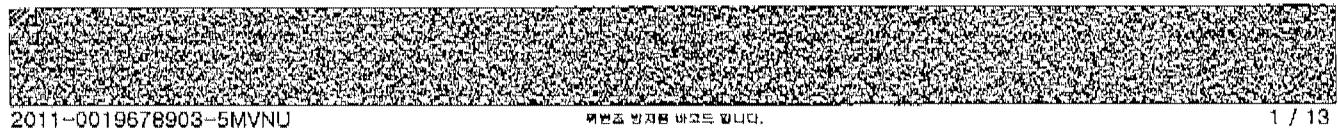
담당변호사 양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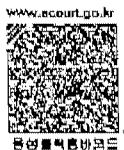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18.

주 문

-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추가열람 청구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신고자 및 관계자의 이름 및 상호, URL(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의 한글이름과 게시판 제목, 게시글 제목 및 동영상 제목 포함), 신고자와 관련된 출신학교명, 직장명 및 소속단체명, 직위, 저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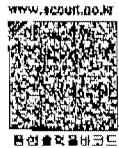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추가열람 청구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정보네트워크센터'의 상근 활동가이다.
나. 피고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전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합의체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자체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다. 원고는 행정감시 목적으로 2010. 3. 8. 피고에게 2009년 제57차부터 2010년 제8차까지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자료(신고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인터넷상의 게시글 등에 대하여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서 시정요구의 대상인지를 판단한 내용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8. '회의자료 중 개인정보', URL 등 사생활 침해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회의자료만 공개하고 별지 추가열람 청구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별지 추가열람 청구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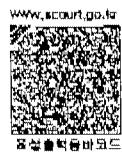
라. 원고는 2010.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름, URL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정보로 판단되므로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여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분리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리 공개를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의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밝혀야 하는데도 단순히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처분의 이유부기를 게을리한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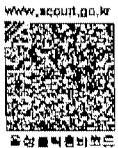
나.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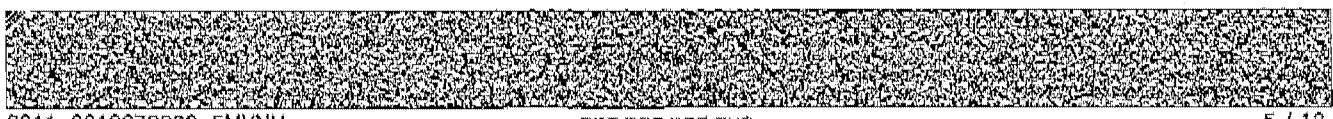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전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신고자 및 관계자의 이름 및 상호, URL(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의 한글이름과 게시판 제목, 게시글 제목 및 동영상 제목 포함), 신고자와 관련된 출신학교명, 직장명 및 소속단체명, 직위, 저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우며, 그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사항 중 신고자 및 관계자의 이름 및 상호, URL(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의 한글이름과 게시판 제목, 게시글 제목 및 동영상 제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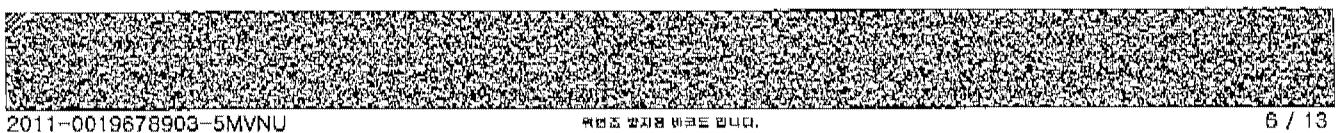
신고자와 관련된 출신학교명, 직장명 및 소속단체명, 직위, 저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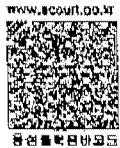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는 공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통신심의소위원회의 다른 회의자료에 대하여도 공개를 요구하여 왔고, 공개대상 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양도 과다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들어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또한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양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신고자 및 관계자의 이름 및 상호, URL(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의 한글이름과 게시판 제목, 게시글 제목 및 동영상 제목 포함), 신고자와 관련된 출신학교명, 직장명 및 소속단체명, 직위, 저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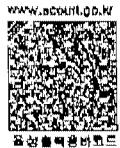


재판장 판사 조일영 _____

판사 김강산 _____

판사 김용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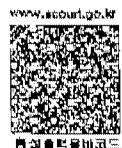


번지

추가 열람청구 목록(비공개편 정보)

1.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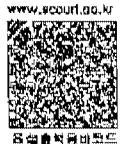
회원 회차	사전번호	회원 회차	사전번호
57차	권리-09-057-038	68차	권리-09-068-030 내지 052 권리-09-068-064, 065 권리-09-068-068 내지 078 권리-09-068-080-080 권리-09-068-082 내지 084 총40건
58차	권리-09-058-056 내지 061 총6건	69차	권리-09-069-001 내지 007 권리-09-069-009 내지 013 권리-09-069-071, 072 총14건
59차	권리-09-059-001 내지 006 권리-09-059-011 총7건	70차	권리-09-070-기-064 내지 068 총3건
60차	권리-09-060다-061 내지 064 권리-09-060다-067 권리-09-060다-072 권리-09-060다-188 권리-09-060바-001 내지 003 총10건	71차	권리-09-071-기-001 내지 030 총30건
63차	권리-09-063-001 내지 007 권리-09-063-020 권리-09-063-106, 107 총10건	72차	권리-09-072-039 내지 046 제2009-동신-072-234호 총7건
64차	권리-09-064-053 내지 059 권리-09-064-158 내지 168 권리-09-064-173, 174 권리-09-064-181 총21건	73차	권리-09-073-001 내지 063 권리-09-073-069 내지 071 총65건
65차	권리-09-066-001 내지 004 총4건	74차	권리-09-074-059 내지 073 권리-09-074-156 내지 161 총21건
66차	권리-09-066가-061 내지 078 권리-09-066가-079 내지 107 권리-09-066가-111 총48건	75차	권리-09-075-001 내지 015 권리-09-075-017 내지 025 총24건
67차	권리-09-067-001 내지 032 권리-09-067-092 권리-09-067-096, 097 총35건	76차	권리-09-076-076 내지 098 권리-09-076-101 내지 116 권리-09-076-131 권리-09-076-099, 100 총42건



2. 2010년

조회 학자	사건번호
1차	권리-10-001-001 내지 029 총29건
2차	권리-10-002-068 내지 073 권리-10-002-078 내지 089 권리-10-002-109 권리-10-002-112 총20건
3차	권리-10-003-001 내지 004 권리-10-003-015 권리-10-003-018, 019 권리-10-003-062 총8건
4차	권리-10-004-076 내지 085 총13건
5차	권리-10-005-001 내지 004 총4건
6차	권리-10-006-068 내지 071 권리-10-006-073, 074 권리-10-006-072 총7건
8차	권리-10-008-072 내지 093 총22건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단서 생략)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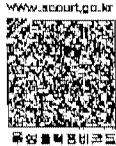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25조 (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실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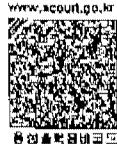
- ① 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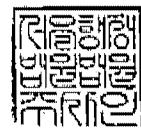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11. 8. 22.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이 규 형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승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첨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
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